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지역을 풍요롭게 문화를 다양하게 -

2015. 2.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은 **삶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지역문화로 이끌겠습니다.

지역은 **얼굴**입니다.

저마다 고유한 얼굴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가꾸겠습니다.

지역은 **역사**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기억을 현재 삶터와 조화시켜 **미래**로 진화하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함께 합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순 서

I. 수립배경

II. 현황 및 문제점

III. 목표 및 추진전략

IV. 중점 추진대책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V. 과제별 추진 기관

I. 수립배경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창조 산업이 지역 발전을 견인한다는 인식하에 문화 자치의 근간을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 성격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5년)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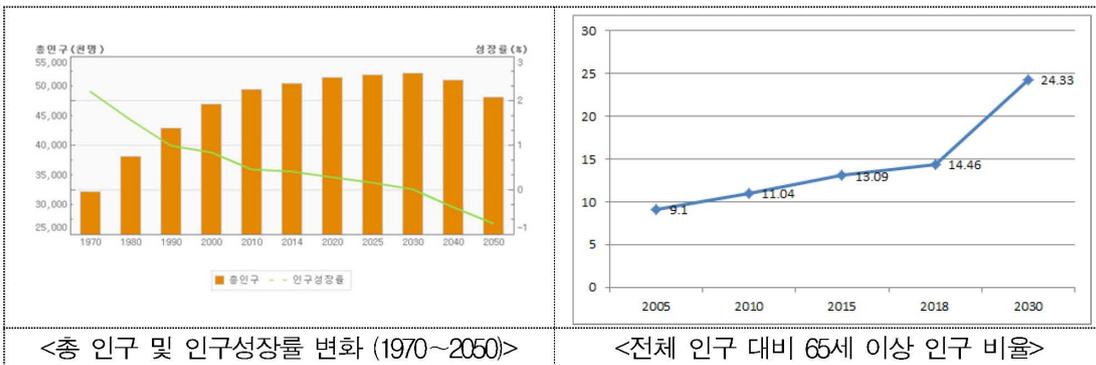
II.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1-2. 지역문화 정책환경 변화

□ 지역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

- (지역의 인구 변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속 진행 (통계청 자료)
 - (전체 인구성장률) ('06) 0.49 → ('10) 0.46 → ('14) 0.41
 - (지방인구 변화) '15년 이전 전남·강원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지방인구 급격 감소 예상
 - (노인인구 증가) '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4.5%로 고령사회 진입 예상
 - * '13년 현재 17개 특별·광역자치단체 중 이미 노인인구 14% 이상 고령사회에 접어든 광역자치단체가 7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 (이주 외국인 증가)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수가 지난 20년간 약 13배, 10년간 2.3배 증가
 - * 이주 외국인 수 : ('93) 76,374명 → ('03)437,014명 → ('13) 985,923명



- (교통·통신의 발달) 고속철도 등 교통망의 발달*로 전국이 반일생활권 화되고, 인터넷·전화 등 통신의 발달로 문화공동체 형성이 용이
 - 지역이 면적 개념뿐만 아니라 교통망을 따른 선적 개념으로 변화
 - IT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상에서 전국단위 문화공동체 출현 가능
 - * '15년도 개통계획 : 호남고속철도, 수서-평택KTX, 신경주-포항KTX 등

□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 증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짐에 따라 지역문화의 중요성 확산
 - * 2012년도 콘텐츠시장 규모는 2조2천억달러로 매년 5.7%성장 예상 (출처 : <http://www.pwc.com>)
-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 발생과 이를 해소하자는 사회적 요구 증대
 - 지역문화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적 가치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기대
 - * 지역문화가 사회 안전망 역할 : ex)부천 송내동생활문화공동체

< OECD 국가(34개) 간 사회분야 주요 지표 비교 (2013년 기준) >

자살률	1위	28.5명
근로시간	2위	2163시간
행복지수	27위*	5.35
출산율	34위	1.19명

* 행복지수는 OECD 34개 국가 외 브라질과 러시아를 포함한 36개 국가 기준

-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 **문화민주주의 Cultural Democracy** : 지역주민들의 실제 문화활동을 우선시키고 문화평등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정책 사조
 - **(문화자치 필요성 증대)** 중앙정부의 세종시 이전, 문화예술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등 계기로 문화정책에서 실질적 문화자치 필요성 증대
- **지역 문화발전의 새로운 정책 틀이 되는 지역문화관련 법 제정·시행**
-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및 지역의 역할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문화기본법('13.12.30.)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 **(지역문화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법 시행에 따른 기본요건의 충족으로 문체부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문화재원 투입·지원구조 변화**
 - **(지방으로의 이양)**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문화부의 24개 사업 356억원 이양('05년)
 - **(지특회계로의 전환)**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 이관과 포괄 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 * 지역의 문화시설 건립 및 하드웨어 구축비용(지방문예회관 건립, 비엔날레 지원, 공립도서관·미술관 건립 등)은 지특회계 이관
 - * 포괄보조금 방식의 도입으로 예산편성 시 광역단위에서 지역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자율 배정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추진 및 관리 임무 부여
 - **(지역협력형 사업)** 문예진흥기금의 지역 이관을 통한 지역협력형 사업 실시('10년~)로 지역 기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자율성 제고
 - * 예술위 지역협력형 사업 : '12년 178억원(서울 16.5%, 지역 83.5%)
'13년 179억원(서울 15.5%, 지역 84.5%)
'14년 222억원(서울 14.9%, 지역 85.1%)
 - **(재원 다양화)** 현금 및 현물 투입, 공간 임대, 문화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들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원 및 자산으로 투입

1-2. 지역문화 현장의 주요 동향

-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 형성으로 지역문화정책 추진 강화**
 - **(지역문화재단 설립·운영)**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기능 강화
 - * 지역문화재단 현황('14.12월 말) : 광역 13개, 기초 49개 등 총 62개 지자체

- **(지방문화원 역할 증대)**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위상 상승 및 역할 강화
 - * 지방문화원 현황('14.12월 말) : 기초 시·군·구 중심으로 229개 설립·운영 중
- **(지역문화기반시설 증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의 획기적 증가

< 문화기반시설 증가 현황 >

(단위 개소)

연도별	총계	국·공립 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 집
2013	2,375	866	754	190	220	229	116
2010	2,127	760	655	145	192	228	147
2005	1,512	527	364	93	150	224	154

□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재발견·재창조로 지역발전 추구

- **(문화도시·창의도시 지향)**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발전 추구
 - * 문화도시 : 전주전통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등
 - * 유네스코창의도시: 서울-디자인, 이천-공예, 전주-음식, 광주-미디어 아트
- **(마을단위 문화 활성화)** 지역에서 생활권을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 마을 단위의 지역문화가 활성화
 - * 문화마을 : 부산 감천문화마을, 화천 감성마을, 광주 시화문화마을 등
-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재창조)** 지역에 이미 존재해온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는 가치 재발견 및 재창조 중심의 정책 및 사업 전개
 - * 대구예술발전소 : 기능이 정지된 담배공장을 구도심의 문화예술 중심공간으로 재창조
 - * 정선아트마인 : 버려진 폐탄광 시설을 문화예술 및 관광시설로 리노베이션하여 활용
- **(지역문화 성공사례 증가)** 지역 고유 자연·문화·역사 자원을 활용한 지역 축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확산
 - * 춘천마임축제 : 마임을 테마로 국제적 융복합적 문화축제로 자리매김
 - * 부산영화제 : 영화제를 통해 작품성 있는 국내영화를 알리는 문화축제이자 아시아의 필름마켓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국제적인 영화제로 성장



- * 문전성시 : 수원 못골시장, 서울 통인시장, 경북 봉화시장 등 지역 시장에서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문화를 통한 시장의 경제적 효과 창출

□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체감형 지역문화사업 전개

- **(생활문화수요 증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활성화
 - * **(생활문화유형)** ‘창조형 문화활동’, ‘봉사형 문화활동’, ‘학습형 문화활동’, ‘감상형 문화활동’ 등
 - * 제주 월평마을 : 생활문화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에서 주민의 문화 활동 및 향유 지원
 - * 성남시 사랑방문화클럽 : 지역의 생활문화 활동을 통해 문화적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문화 활동 증가
 - * 작은 영화관 : 문화향유가 쉽지 않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영화를 상영함으로써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동식 영화관 운영
 - * 마을미술프로젝트 : 지역의 문화소외지역이 되는 마을을 대상으로 벽화, 공공디자인 등 커뮤니티아트 활동을 통해 문화 환경을 개선하고 향유기회를 제공

【지역문화기반 사회적·경제적 성공 사례】

				
(공공미술) 부산 감천문화마을	(생활문화)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문전성시)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지역축제) 춘천마임축제	(유희 공간 활용) 인천아트플랫폼

- **(문화공간의 유연성 확대)** 지역문화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로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을 연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고(도서관+전시실+체험+공연+판매 등),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공원, 역, 자치센터, 골목, 로비 등)

2 문제점

2-1. 지역간 문화격차 및 문화 불균형 심화

□ 지역별 문화 격차로 인한 문화향유 불균형 발생

- **(문화자원의 집중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의 문화시설 운영 자원 격차*, 시설 운영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지역의 문화격차 심화 및 문화향유의 기회 부족
 - 지역별 적정 문화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 (지역문화자원 지수) 수도권 평균 0.017 > 비수도권 0.006 (2013 지역문화 지표 지수화를 통한 비교분석, 문체부)
 - ** (법정사서확보) 수도권 소재 지자체 평균 53.3% > 비수도권 30.9%
- **(문화향유 지역격차 잔존)** 농어촌 지역 중심 군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람 기회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간 격차 존재
 - * (무료공연 진행건수) 도시 평균 75건 > 농촌 평균 13건
 - ** (문화관련 교육강좌수) 도시 평균 149건 > 농촌 평균 15건
- **(지역문화의 획일화 경향)** 창조성과 독창성에 기반한 지역문화 육성이 아닌 획일화된 대중문화가 전국적으로 확대 경향
 - * 문체부 2013 전국 시·도별 축제총괄표 내 644개 축제 중 벚꽃축제 10개, 한우축제 8개, 인삼축제 7개, 사과축제 6개 등 유사중복축제 다수

□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용 미흡

- **(문화기반시설 운영 애로) 예산부족으로 인한 경영난, 콘텐츠 및 인력부족 등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 애로**
 - * 부산 지역 지자체 소속 공연장 재정자립도 11.2% (부산일보, '15.1.5)
 - ** 제주도내 문화시설 문제점 (도민대상 설문) : 운영콘텐츠부족 39.3%, 전문인력 부족 22.1% (제주일보, '13.11.27)



- **(문화기반시설 노후화 및 활용 미비)** 그간 지역문화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양적 공급은 일정수준 성과를 거두었으나 프로그램 운영 미흡과 시설 노후화로 인한 리모델링 문제 대두
 - * 전국 문예회관 공연프로그램 가동율 34.8%, 도 지역 28.4%
 - ** 전국 220개 문예회관 중 20년 이상된 노후 시설이 62개 (28.0%) (*13 공연실태조사)

2-2. 지역문화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미흡

□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의 기초 역량 부족

- **(국가 또는 지자체 주도)** 대부분의 지역문화 사업이 국가주도 혹은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시행
 - 민간의 자치능력 배양에 한계, 지속성 확보의 어려움
- **(하향식 정책 추진)** 중앙정부의 하향식 문화정책 및 공급 중심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문화주체로서의 역량이 미흡하고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구축에 애로
- **(단기적 성과 지향)** 지역특성에 맞는 장기적 계획 없이 단기적 성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지역문화정책의 실효성 및 지속성 결여
- **(지역문화전문인력 부족)** 문화인력의 서울 및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실제로 지역에서 문화를 실현하고 창조적 문화를 이끌어 나갈 지역문화 전문 인력이 부족
 - * 전국 문화기반시설, 문화관련 단체 등의 종사 인력은 약 34,000명으로 추정 (비정규직 제외)되나 지역문화 발굴·기획·운영 인력은 매우 부족

□ 지역의 문화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시스템 미비

- **(지역문화 거버넌스 취약)** 중앙과 지역간 협력을 위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 및 지역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채널 취약
 - (ex) 전국 주민자치센터 설치 2,765개 (문화여가프로그램 22,277개)이나 민간협의체(한

- 국주민자치중앙회)가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연계는 미흡
- **(지역문화 협력 네트워크 미흡)** 각 부처 지역사업의 협력체계 부재로 사업연계 및 복합 미비로 비효율 발생 및 지역 간 경쟁 구도 경향 심화
(ex) 마을만들기 사업 : 문체부 문화도시·문화마을, 국토부 도시재생, 행자부 희망마을, 농림부 행복마을 등
 - **(평가 및 환류체계 미흡)** 중앙부처의 공급자 중심 지역사업 추진으로 결과분석 및 통합적 관점의 지역문화정책 추진 곤란
 - **(지역 문화정책 지원기능 활성화 필요)** 지역 현장에서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춘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지원역량 강화 및 기능 활성화 필요
 - * 현재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전문기관이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재원 및 운영의 독립성이 미약하고 문화행정 차원에서의 연계 고리도 취약한 실정
 - * 지방의 기초생활권 단위에서 지역문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이 부족하며 이에 대한 전달체계 또한 행정적·물리적 간극이 커짐

2-3.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여건 열악

□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여건 악화

-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그 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지역의 문화재정 상황도 동반 악화.
- 대체적으로 군지역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의 절반수준임.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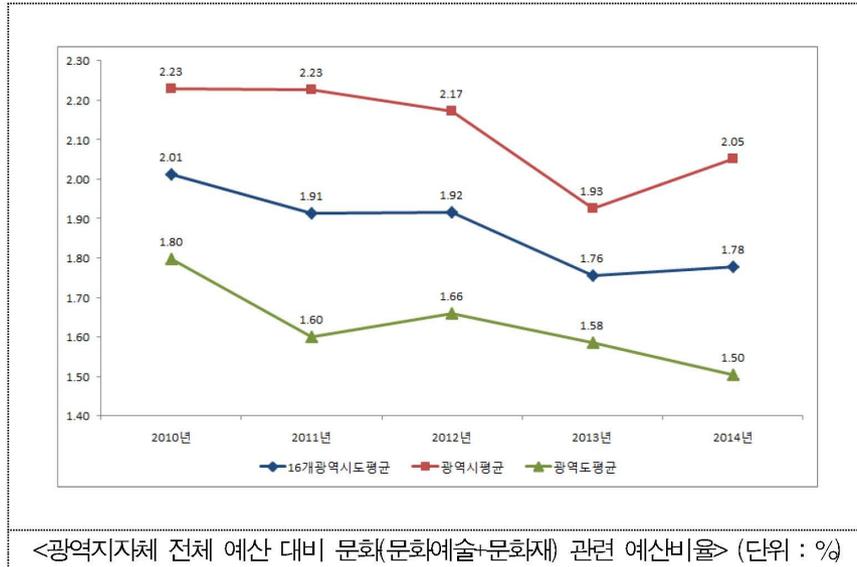
- '14년도 : 특광역시·특별자치시 : 64.8, 도·특별자치도 : 33.3, 시 : 36.5, 군 16.6, 자치구 : 31.1

*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지역의 문화재원 부족)** 지역의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지역의 전체 예산 대비 문화분야 예산비율*이 지속 하락, 이에 정책 및 사업 실현을 위한 재원 부족 우려



* ('10) 16개 시도 평균 2.01% (광역시 2.23, 광역도 1.80) → ('14) 16개 시도 평균 1.78% (광역시 2.05, 광역도 1.50)



□ 지역문화정책의 파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재원 투입 구조 취약

- (하향식 예산지원)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사업 추진 곤란
- (예산규모의 영세성) 소액 다건 식의 단위 사업별 예산 지원으로 사업의 효과성 확보 미흡
- (투입 예산의 복잡성)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국고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등 재원의 복잡성 및 상이한 가이드라인 등 지역문화 통합재정관리가 곤란

□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사회기반구조 미비

- (문화일자리 부족) 지역문화발전전략이 지역경제를 주도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시스템 미비
- (지역 문화서비스 지원기능 미흡) 문화누리카드, 문화예술교육 사업 등 사업 규모 및 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인력 및 조직 등 전달체계 확충 및 자체예산 확보는 미비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

추진
목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생활문화 참여율 '14년: 5% → '19년: 10%)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

(문화기반시설 '14년: 2,375개소 → '19년: 개소)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

(문화도시·문화마을 '14년: 3개소 → '19년: 50개소)

사람중심

지역주도

상생협력

추진
전략

지역문화
역량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생활문화 진흥
-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
격차해소

-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문화접근성 향상
-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
발굴창조

-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 지역문화 가치 발굴
-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추진
체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구축



IV. 중점 추진 대책

1 지역문화 역량강화

- ☑ 지역문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필요성

- 지역 스스로의 지역문화역량 강화 및 발전
- 협력적·상생적 주민 공감 연대 구축

◆ 추진방향

-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발전 토대 마련
- 지역문화인력의 발굴·육성을 위한 종합적 인력양성 체계 구축
-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사업추진 방향 >

- 지역문화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기획·개발·평가 등을 담당할 인력 양성
- 지역에 생활기반을 두고, 지역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인력
- 문화경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지역문화기획 등의 능력 배양 우선

-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 대상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청에 의한 공모에 의해 지정, 2년간 지원
 - '15년도 권역별(4개) 1개소 → '18년도 광역별(16개) 1개소로 확대 추진
 - 현장 학습을 포함한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운영
 - 지정기관에 대하여는 강사료, 실습비 등 국비 지원
 - * “지역문화 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제8항)

1-1-② 현장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강화

○ 지역문화 청년인력 발굴 지원

- 지역문화 ‘청년창직’컨설팅(3년/컨설팅 지원단 설치 운영) 및 사업자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 * 청년창직 : 대구 중구 삼덕상회, 장거쌀롱, 전주남부시장 청년몰, 이태원 계단장 등 창조적이고 다양한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발굴 효과. 집·공원·광장 등으로 확대
- 지역문화 청년인턴 제도 시행으로 지역문화 전문가와 청년인턴 간의 도제식 교육 연계·지원

○ 지역 정착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 문화귀촌 희망자에 대해 문화프로그램 시범 운영비 및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문화귀촌’ 공모사업 시행
- 자치단체의 귀촌(歸村) 예술인 마을 조성 시 문화특화지역조성 사업 등과 연계 인센티브 확대
- 지역문화 레지던스 공간 확충 및 문화귀촌 캠페인 전개

○ 지역 문화지도자 및 행정인력 문화행정 역량 강화

- 지방행정연수원 등 교육기관의 지역문화 과정을 신설, 지역문화 지도자 및 오피니언 리더 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기관과 연계, 지방 행정인력의 문화행정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 활동 연계 강화

- 지역예술 창작, 지역문화 유통·산업화 등 유형별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 주민기획자 등 다양한 유형의 인력 양성 및 운영 지원체계 마련



- * “지역문화 창조인력”이란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지역 예술인력, 지역 문화산업 종사자, 시민 등 지역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유형의 인력을 총칭

1-1-③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 국가 차원의 종합적 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경력 관리
 - * 사례) 캐나다 문화인적자원위원회(Cultural Human Resources Council, CHRC)
- 지역문화 전문인력 DB 구축,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재능경로제도(Talent Pathway Scheme) 도입
 - 분야별·경력별·생애별 경력관리·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 사례) 영국 창조허브(Creative Hub: Creative Britain: New Talents for the New Economy, DCMS, '08)
-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복리후생 체계 마련 등 환경 개선 정책 추진

○ 지역문화인력 인증제·등록제 도입

- 문화기획자, 문화기획자, 문화매개자 등 지역문화전문분야 직종 개발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문화여가사 등 포함) 자격증 제도 도입 검토
 - * 기존 문화인력관련 자격증(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등)과 연계
- 민간자격증제도 도입 후 국가자격증 전환 추진

1-2. 생활문화 진흥

◆ 필요성

-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 추진방향

- 지역생활과 밀착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생활문화 활성화

◆ 사업내용

-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지역생활문화시설 거점 조성을 위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확대

- 지역 내 유휴시설 및 기존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매년 30개 규모)
- 입지·규모·기능 감안 “거점형”과 “생활권형”으로 구분하고, 동아리방, 작은 도서관, 다목적홀 등 다양한 생활문화 형성 공간을 조성
 - * 거점형은 1,000㎡ 내외(시군구 설치), 생활권형은 200㎡ 내외(읍면동)로 조성
 - * 2015년도 30여 개소 추가 조성 추진(135억원)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전문 컨설팅단 운영(10명 내외, 현장실사·심의 및 시설별 컨설팅, 3월~), 지자체, 시설운영자 등 대상 권역별 생활문화아카데미 운영*
 - * 커리큘럼 구성, 권역별 아카데미, 통합워크숍
-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이용 수요조사 시행

○ 문화기반시설의 생활문화시설 기능 강화 및 프로그램 등 지원

- 다양한 국·공립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 공간 이용 활성화
 - * 국가(공기업 포함)소유 유휴공간에 대한 전수 조사 추진 및 관련 정보 제공



-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마을회관 등 생활권 기반 공공 문화시설의 생활문화 활동 프로그램* 및 인력 지원
 - * 생활문화동호회 연습·발표·형성, 주민 참여·체험·교류, 지역 예술가 멘토링, 지역주민 공연·축제 프로그램 등 운영
- 지역별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시설 간 연계활동 지원

○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자체·문화시설 관계자·전문가 등으로 추진협의체 구성(10인 이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15.1월~2월)
- 지역 우수 사례 발굴·확산, 전국 동호회 페스티벌 개최(10월, 국립극장)

1-2-② 지역단위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강화

○ **주민 주도 자생적 생활문화 형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마을회관, 아파트 커뮤니티 공간 등 주민 주도 운영 커뮤니티 공간의 생활문화 공간화 리모델링 지원
- 주민 주도 형성, 운영되는 생활문화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비(전기, 가스 등) 세제 혜택 지원 추진
- 마을미술 프로젝트, 공동체 연극·영화 등 지역 공동체 기반 자생적 커뮤니티아트(Community Art) 활동 지원
 - * 생활문화시설 : 문화시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 지역자치센터, 마을회관, 생활문화센터, 영상미디어센터, 지역미디어시설, 지역문화예술창작공간
 - * 생활문화시설의 운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권장

○ **문화취약지역 주민참여형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지원**

- 문화취약지역(임대주택, 농촌 등) 중심으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문화 프로젝트(목공, 공연, 연극 등)에 대한 활동비 지원('15년 12억원, 30개)
 - * (예시) 부천 - 마을 연극, 생태 탐방, 마을 장터 프로그램 등 운영

○ **생활문화공동체 시범사업 확대**

- 임대아파트단지, 농산어촌 주민 등 문화취약지역 주민대상 문화

예술 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형성 지원

- *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지역별 예술단체당 10~60백만원, 최대 3년 지원
- 구도심 등 문화취약 지역의 일반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
- 이주 외국인 대상 특화된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추진

○ 생활문화 참여 확산을 위한 생활문화축제 개최

- 생활문화동호회 및 마을 문화 공동체 형성·발전을 위해 지역별 생활문화동호회 또는 생활문화제 개최 지원
- 국·공립 문화시설과 연계, 지역 간 교차 전시·공연 및 ‘생활문화공동체의 날’을 통한 지역 축제성 강화

1-2-③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 온라인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

- 봉사자와 각 문화시설간 봉사일감 실시간 매칭 및 실적 관리를 지원하는 문화자원봉사매칭시스템 구축('14년 오픈)

○ 시스템 고도화 및 인센티브 강화

-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 타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수요처), 청소년·외국인 등 회원가입 대상 확대
- 주요 문화시설 이용 할인, 우수 봉사자·봉사단 표창 수여

문화체육자원봉사 매칭시스템 개요(<http://csv.culture.go.kr>)



- 일반인 대상 오픈 : '14.12.22~
- 구성 : 봉사일감 매칭, 봉사실적 승인·관리, 커뮤니티 운영·정보 제공 등
- 추진체계 : 문화예술위원회 총괄 운영본부, 전국 229개 문화원 및 228개 생활체육회가 시군구 지원센터로 지원

○ 문화자원봉사 국민 인식 제고

- 사회 여가 활동의 모델로 문화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을 위해, 관련 캠페인 및 전국 문화자원봉사 대회 개최 등

○ **문화시설의 문화자원봉사 일감 및 운영 전문성 확대**

- 각 시설별 업무특성에 따른 다양한 문화자원봉사 일감 확대 및 문화자원봉사 운영관리 매뉴얼 제작·보급

○ **문화자원봉사 지역 지원센터 운영**

- 각 지역별 지방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문화시설을 문화자원봉사 상담 안내 지역 지원센터로 운영

○ **은퇴자들의 재능나눔형 문화자원봉사 활동 지원**

- 문화자원봉사를 전문성·경력을 보유하고 은퇴자들이 참여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및 여가활동으로 적극 활용
 - * 은퇴자들의 생활문화시설 운영 참여 적극 확대 지원
- 인문정신, 문화예술, 대중예술 등 분야별 우수 재능 나눔형 문화자원봉사 선도적 모델 구축

<문화자원봉사 유형>

- 은퇴한 석학·언론인·문화계 인사 등이 참여한 “인생나눔교실” 운영
- 문화예술 명예교사 위촉, 체험형·소통형 교육 봉사프로그램 운영
- 원로 대중예술인들이 참여한 “복고클럽 문화봉사단” 운영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필요성

-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유기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 추진 필요

◆ 추진방향

- 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문화 생태계조성
- 장소성에 기반한 지역문화자원의 통합적 활용체계 구축

◆ 사업내용

-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1-3-1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 계획 수립

○ 지역발전계획 수립 시 문화 분야 포함

- 문화 계획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 추진방식 연구,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
 -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는 지방정부 문화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Guideline), 핸드북(Handbook), 매뉴얼(Manual), Toolkit 등을 개발
- 관계부처 MOU체결 등을 통해 지역문화진흥 협력체계 마련

○ 국가 등의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영향평가 실시

<문화영향 평가제도>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자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 문화영향평가와 연동하여 지역문화개발사업의 특성화·분권화·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국토 및 지역개발의 문화계획 전문가 참여 확대 추진



1-3-②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 지역문화컨설팅 운영체계 마련 및 내실화

- 지역문화관련 정보제공 및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앙단위의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 지역대학, 지역문화재단 등을 지역문화컨설팅 수행기관 또는 지역 문화진흥 자문 사업단으로 지정·운영

○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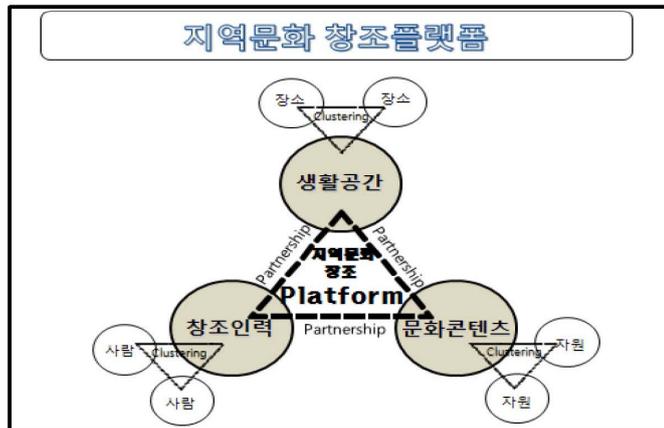
- 지역 주요 문화관련 기관, 지자체 등의 지역문화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지원(50% 정률 지원) 확대

1-3-③ 지역문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 특성에 맞는 공간·인력·콘텐츠가 만나는 '창조플랫폼' 구축

- 지역 문화정책의 통합적 계획·실행을 위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거버넌스와 과정 설계, 공간·인력·콘텐츠의 클러스터링 등을 지원
- 역할 비중에 따라 공간 중심, 인력 중심, 콘텐츠 중심의 플랫폼 구축, 클러스터링 이후 상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

* 사례 : 인천 아트플랫폼(공간 중심), 청년허브(인력 중심)



<지역문화 창조플랫폼의 3대 클러스터링 모형>

○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시범 운영 사업 지원

- 지역문화콘텐츠와 거버넌스가 발달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시범사업 추진

1-3-4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지역문화 통합 지원서비스 위한 '지역문화지원센터' 구축
 - 지역문화 주체 간 소통과 교류 및 지역문화단체 지원 사업 추진
 - 지역문화단체 및 문화기업(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역문화 협동조합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예산, 회계, 법률, 공공서비스 등)
 - 지역문화 주체들의 거버넌스 구축, 소통 및 교류지원 프로그램 운영
 - * 지역문화재단 등 지역 소재 문화기관 활용
-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지원
 - 지역문화와 복지, 환경, 교육, 지역, 예술 영역의 각각의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시스템 구축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복지	장애인·어린이·노인·여성·다문화 '문화복지 지역네트워크 사업'
환경	지구환경, 지역환경 살리기 '문화생태 지역네트워크 사업'
교육	소외계층·문화취약계층 '문화교육 지역네트워크사업'
지역	소외지역·문화취약지역 재생 '문화공동체 지역네트워크 사업'
예술	예술인복지, 지역예술보존 '문화예술 지역네트워크 사업'

- 지역 문화권내의 문화시설 네트워크 추진(교육·훈련, 홍보, 마케팅 등)
-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문화기관 간 연계 협력 사업 발굴·지원
 - 인근 지자체 및 문화기관 간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연계 협력형 문화 사업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 해소
-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 문화 조성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필요성

- 지역별 특화된 문화진흥을 통한 문화격차, 행복격차 해소

◆ 추진방향

- 지역의 정확한 현황 조사를 기반으로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 새롭고 다양한 문화의 수용이 가능한 유연한 지역문화의 틀 마련

◆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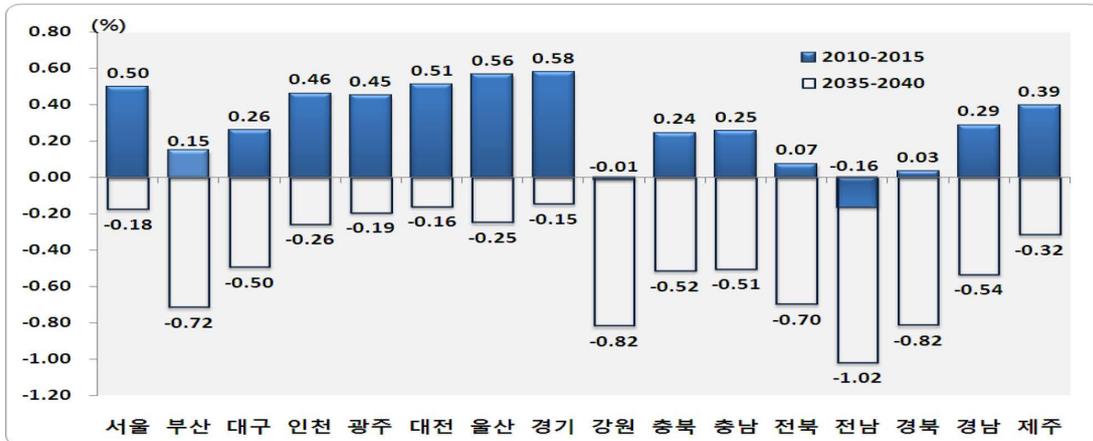
-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2-1-1 지역별 인구 현황 및 변화에 대응한 문화지형도, 문화기상도 마련

○ 지역별 장래인구변화와 수요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조성

- 시군구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문화기반 시설 수요 조사
- 시군구 인구 및 연령별 인구현황 등에 대비한 문화기반 시설 분포도 작성
- 시도별 장래인구변화 추계, 시도별 인구성장률, 고령화 비율, 이주 외국인 비율, 도시화 비율 등 지역별 인구변화 추계를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각 지역별 수요에 의한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조성

< 시도별 연평균 자연증가율, 2010-2015 및 2035-204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 2010 - 2040) >



○ **고령화, 저출산 사회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조성**

- 아동, 청소년, 중장년층, 노년층에 이르는 연령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조성
- 어린이 전용 아트센터, 청소년, 여성 및 가족 문화시설, 다문화센터 등 연령별, 유형별로 사회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기반 시설 조성
- * 어린이 시설의 경우 창의성 계발을 염두에 두고 설립할 필요 : 박물관, 미술관 등은 교육장소가 아닌 어린이의 놀이터, 호기심에 대한 답을 찾는 마중물이자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고양하는 장소

- 2010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545만명(인구의 11.0%)으로 2030년 1,269만명(24.3%)으로 두배 이상 증가, 2040년 1,650만명(32.3%)에 이를 전망
 - 베이비부머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2030년까지 고령인구 비중이 전국적으로 8.6% 가량 급증
- 2016년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 추월, 2020년 고령화 사회 진입
- 유소년인구 1백명당 고령인구를 의미하는 노령화지수는 2010년 68.4명에서 2017년 104.1명으로 유소년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고, 2040년에는 288.6명으로 노인 3명당 유소년 1명꼴

○ **노인들의 문화향유 확대와 재교육을 통한 문화일자리 창출**

- 고령화로 인한 적극적 노년의 증가로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지 확대에 의해 사회참여와 문화향유 의지 증가
- 문화개념의 확대에 의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행복, 경제발



전을 등의 사회전반에 문화적 가치 확산

- 지역별 고령화 추세 및 노인 구성 비율에 따른 재교육을 통한 문화일자리 창출

유럽연합은 2012년을 “적극적 노년(Active ageing)”의 해로 선정,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기회 확대, 평생학습체계 구축(학력증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학습), 자원봉사 등을 통한 사회참여와 건강 증진 등을 핵심 목표로 설정. 이 장은 한국 고령인구의 특성을 적극적 노년의 개념에서 살펴본 것임

2-1-1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 지역문화 현황 조사를 통한 지역문화 실태 파악

- 문화정책, 문화자원, 문화활동, 문화향유별 지역문화 세부지표 조사 (2~3년 단위)
- 문화격차를 포함한 지역문화 현황조사, 문화통계 확대 실시
 - *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예술인실태조사 등 기존의 양적 기초조사를 보완, 지역문화현황을 심층적으로 파악

○ 지역의 삶의 질과 문화 창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문화지표 개발

- 지역문화생태계를 진단할 수 있는 다원적 지역문화생태계 지표 개발 및 평가시스템 구축
- 지역규모 및 유형에 따른 지역 행복도를 비교하는 지역행복지표 포함

< 삶의 질 측정지표 사례 (자료: 통계청) >

삶의 질 측정 분야	삶의 질 측정 내용
소득·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 중심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 중심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
문화·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도시화 심화 등에 따른 지역문화기반 시설의 균형적 확충

- 지역문화시설의 균형적 확충을 위한 연구를 통해 도시규모, 지역 단체, 인구 등 기준으로 지역별 최소 필요 시설의 수, 종류, 규모

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 * 한국의 도시화율 심화(2025년 86.3%), 도시를 중심으로 공간 네트워크화 형성
- * 2011년 현재 메가시티는 23개, 반면 2025년에는 37개 예측

○ 지역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 평가 및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 및 운영성과를 파악
-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지역문화시설 활성화 계획’ 수립(‘15년 7월)
- 시범 기관을 선정(지역별 10개 내외)하여 프로그램* 연계 지원
- *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공연영상화, 길 위의 인문학 등
- 프로그램 지원 후 사후 평가 실시, 성공사례 단계적 확대

○ 문예회관 등 지역문화기반시설의 리모델링 수요 컨설팅 지원

- 시설 활용도, 운영현황 조사 ⇨ 리모델링·프로그램 수요 등 분석
- * 지역문화전문가로 TF 구성(‘15.3월), 지역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15.6월)
- 전문가 중심 (假)‘문화시설재생 위원회’ 구성 : 노후하고 운영이 부실한 문화시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확충, 리모델링 추진 등 수요에 부합하는 컨설팅 지원
- *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로 구성(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2조)

【문화기반시설 주요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구분	이용률('14)	개소수	문제점	개선방향
문예회관	6.6%	220	노후화, 활용 부진	지역 맞춤형 리노베이션 추진
등록박물관	16.6%	754	난립, 콘텐츠 부족	연계 협력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도서관	10.4%	886	인력부족	인력 확충
작은도서관	-	4,686	인력·장서·프로그램 부족	인력 확충(책친구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문화의 집	1% 내외	229·116	폐쇄성, 이용도 부진	생활문화센터 연계, 동호회 공간 등으로 재정비, 시설별 특성화(문화원 →향토자료관 등)

- 시설의 리모델링만이 아니라 역할과 기능의 리모델링도 추진



- 공간 활용에 대한 유연하고 창조적 발상
 - * 농산물시장+예술공간(시드니 캐리지웍스와 에블레이 마켓)
- 시군구 인구감소 추이 및 교통발달에 따른 지역간 경계 불분명, 도시화문제 등 지역현실을 감안한 리모델링 컨설팅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 공연장-공연예술단체를 연계한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지역 문예회관 및 민간 공연장)의 연계 및 공동 프로그램 운영 경비 등 지원
 - * 상주가 어려운 공연장의 경우, 외부단체와의 비상주 장기 공동 프로젝트 운영
 - 상주단체 간 우수 프로그램 교류 지원(순회공연 방식)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 및 사업성과 공유
- 지방 문예회관 활용, 민간 우수공연 초청 및 자체 기획공연 운영 지원
 - 문화예술회관 및 인근시설에 국립예술단체 우수 공연 레퍼토리 파견
 - * 매년 240여개 기관 지원

지원유형	지원대상	지원자격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공연법 제8조 (공연장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공연장 ※ 서울 지역 문예회관 제외
문예회관 기획 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국립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 재정자립도 40% 이하 지역 문예회관	
문예회관과 국립예술단체 공동제작 지원	· 전국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날 특별프로그램 지원	· 전국 문예회관	

- 지역영상미디어 센터 활용, 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확대
 - 미디어 교육, 영상콘텐츠 지원, 소외계층 미디어 활동 지원, 지역 문화시설 연계사업 등 추진
 - * 전국 33개소 운영, 1개소 기준 10억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 필요성

- 지역별 격차에 따른 문화향유 혜택의 불균형 시정

◆ 추진방향

-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

◆ 사업 및 지원내용

-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2-2-① 문화 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 문화환경 취약지역 선정 및 우선 지원으로 문화격차 해소

- 문화환경 취약지구 우선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실시
- 재정자립도·문화역량 등 고려, 차등 보조율 적용 제도 개선 추진
- 정부 공모사업 추진 시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
-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 지원 추진

○ 문화소외 지역 대상 공연 등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개최로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 예술단체, 우수 민간단체 취약 지역 문예회관 공연 확대
 - * 재정자립도 40% 미만 지역 중심
-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실시
- 지역 단체의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자율적이고 참신한 사업 발굴
 - * 청소년 쉼터, 자활 공동체, 노숙인 쉼터 등 사각지대 발굴

○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예술교육 특화형 체험버스 운영 및 예술교육 장르 다양화
-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예술체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정거장 정기 순환선’을 개발·적용
 - * (예) 특정 월 혹은 특정 요일에 약속된 지역을 방문, 1년 동안 동일 지역을 2~4차례 정도 거치도록 노선 설계



2-2-② 문화소의 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 문화소외계층 유형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임대주택거주자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군인,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등 교정시설 수용자, 노인, 장애인, 노숙자, 재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농어촌, 도서(섬), 산간 벽지 및 공단지역 주민 등

○ 지역사회 내 문화다양성 증진 관점의 '무지개다리사업' 지원

- 연령, 사회계층, 직업, 이주민, 장애, 농산어촌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교류와 소통을 촉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기획·추진단체 선정·지원

○ 지역 어르신 사회참여 프로그램 확대

- 어르신을 문화교육 수혜자에서 지역문화 창조자·전승자로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여가기회 증진하는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추진
- * (1단계) 어르신 문화학교 → (2단계) 문화나눔 봉사단 → (3단계) 사회적 기업화

○ 지역 문화소외계층 공연 활성화 지원

- 지역의 실버극단, 실버합창단, 실버악단 등 문화활동체의 문화소외 지역,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공연 지원
- 지역문화재단·지방문화원과 연계,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실버 공연 경연대회(실버문화올림픽) 개최추진
- * '15년도 전국 기초 지자체 대상 20개 단체 선정 지원 추진

2-2-③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 재난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미술, 음악, 무용 분야 등 맞춤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 추진
- *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전국 200여개 센터 설립·운영 중 (정신보건법 제13조)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의 토대인 지역문화재원 부족

◆ 추진방향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 방안 추진
-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련
- 지역문화재원 투입의 효율성 증대

◆ 사업내용

-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
-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2-3-1 중양정부의 지역문화 지원방식 개선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운영 방안 개선

- 보조사업을 포괄보조 형태로 개편하는 등 추진방식 지속 개선
- 지역문화브랜드 사업과 지역문화네트워크 사업 등 지역문화 역량 강화사업에 일정 비율 배분 추진

○ 지방이관 사업과 이양사업의 평가 및 개선

- 중앙정부 직접사업을 지역이관사업과 이양사업으로 전환하되, 전달 체계형 사업 중심에서 지자체 자율형 사업으로 개편
- 이양사업의 평가를 통해 효과 검증 및 개선방안 마련

○ 예산지원 방식의 개선

- 단위사업별 하향식 지원방식에서 지역단위 관련 사업의 융합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원 방식 개선
- 지역 내 다양한 부처에서 진행되는 문화관련 사업을 연계,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의 재정자립도와 지역발전주기에 따른 매칭 비율 차등화

2-3-2 중앙과 지방간 협력을 통한 재정 확충 및 체계화

○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마련

- 장기적으로 (가칭)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안정적 지역문화



예산 및 통합적 재정 정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추진

- * 현재 문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일부사업을 지특회계 (포괄보조)로 이관하였으나, 우선 사업 순위에서 제외 가능성

○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 방안 수립 추진
- 장기적으로 국고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출연토록 추진
- *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국가의 지역문화진흥 재원확충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 사항에 대한 내용은 부재

○ **지역과 중앙의 역할 분담 및 효율화**

- 중앙의 문화기본권 보장 및 선도, 지역의 문화정책 개발과 추진으로 역할 분담을 위한 자치권(정책, 역량, 인력, 자원) 확보
- 지역문화 추진 체계 정비를 위한 기반 마련

2-3-③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 **재원 확충 사례 발굴 확산 및 제도 개선**

- 지역문화사업 공동개최 등 다양한 형태의 민간 재원 투입 유도
- 커뮤니티 아트 비즈니스와 연계한 <커뮤니티 아트 펀드> 개발
- 지역문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 개발

○ **지역문화 기업메세나 활성화**

- 지역 기반 기업의 지역문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업과 단체 간의 매칭지원 및 세제 혜택 등 제도 개선 추진
- 지역특성화 매칭 펀드 지원 사업 추진

○ **문화기부 활성화**

- 민간기부, 공간기부, 시간기부 등 다양한 기부방안 추진
- 기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방안 강구, 문화기부 캠페인
- 문화기반시설의 입장료 대신 방문객 기부금 모집 시범사업 추진
- 문화기부 포털 구축 기부자 명단 게재 등 기부백서 발간, 기부된 금액의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성 제고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 필요성

- 지역고유의 전통유산과 문화자원의 발굴
-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 공간 창조적 재생
-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3-1-1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 공간의 창조적 재생

○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 근·현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지역문화거점으로 조성
- 지역별로 근·현대 역사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유희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문화자산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생
- * 대구예술창작발전소, 인천 아트플랫폼, 청주 연초제조창, 도청 이전건물 등

○ '원도심'의 문화적 재생을 통한 지역가치 향상

-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역문화컨설팅 사업,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추진(국토교통부와 협력)
- * 도시재생 특별법 ('13.12.31 공포) 제33조 1항에 의거 도시재생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외국사례 : 런던 밀레니엄 프로젝트】

- 21세기를 맞아 런던의 낙후된 지역을 거점으로 도시활성화의 기폭제가 된 대형 문화예술 프로젝트 시행



<밀레니엄 돔(Dome)> <밀레니엄 브릿지> <밀레니엄 빌리지> <런던아이>

3-1-②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 **한식, 한옥을 비롯한 지역고유의 한문화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 한문화(K-Culture) 3.0 사업 추진**
 - 문화예술, 창조산업, 환경 및 생태, 역사문화, 자연유산 등 유형별, 테마별 선도 브랜드 개발
 - 지역 한문화 콘텐츠와 스토리를 개발하여 테마별로 한류문화길 (K-Road) 브랜드 개발
 - 기존 정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추진체계 정비
 - 국내외 제작·유통 판로 확충 및 사업모델 개발
- **문화유산의 공간 계획적 연계 확대**
 - 문화유산, 전통공연장, 무형문화재 작품 공간, 소형 극장 등을 연계
 - 지역 특화된 창작극, 뮤지컬 등을 지역의 공연 상품 등으로 활용
- **매장문화재 등 비가시적 문화유산의 활용 확대**
 - 매장문화재를 보존·가시화하여 지역의 역사적 고유성을 회복
 - 지역 역사 및 생활문화의 연구·교육과 관광자원으로 활용

3-1-③ 마을별 전통놀이 등 문화 자원 복원 및 확산

- **세시풍속의 지역문화 자원화**
 - 절기별 세시 풍속을 지키는 마을 선정 및 관광자원화('15년 시범 사업 추진)
 - 주요 세시 풍속 전래 마을에 대한 통합적 정보 제공 및 홍보

- **전통축제 및 공동체 놀이 문화의 복원·전승**
 - 마을별 전통축제 실태조사 및 복원·전승 지원
 - 지역 고유의 전통놀이문화를 발굴·복원하여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활용
- **전통지식자원의 발굴 및 활용**
 - 민속어휘, 민간의료, 전통생활지식·기술 등 전통지식자원 발굴
 - 전통지식자원의 아카이브 구축과 연구·전시
 - 이야기 할머니, 전통지식 강사 양성 및 인성교육 놀이체험 프로그램 개발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 필요성

-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 가치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 추진방향

- 지역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체계 구축 및 발굴을 통한 지역가치 정립
-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긍심 제고

◆ 사업내용

-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구축
-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 **지역문화자원 정보 및 공유시스템 구축**
 - 지역의 전통자원, 문화유산,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문화자원, 문화인력 등의 아카이브 구축
 - 지역문화자원의 분석과 매핑, 분포도 파악
 - 지자체별 구축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활용
 - * '14년도 : 기초 연구, '15년도 기본계획 수립, '16년도 시스템 구축 추진
- **지역문화 다양성 지도 개발**
 - 지역의 현황, 지역의 문화자산 등 지역의 현재 상황을 조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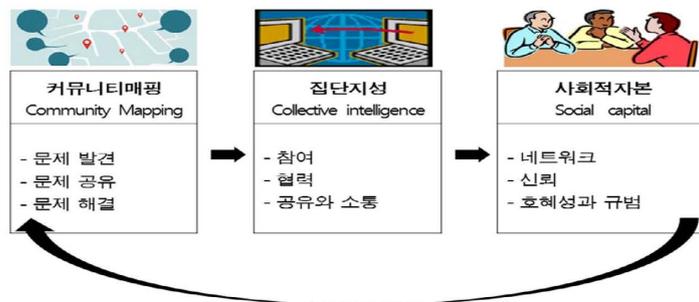
미래의 모습을 예측·분석하여 지역별 문화지도 작성

- * 양적 문화지도 (지역사회 유형의 문화자원 지도, 무형의 문화정체성 지도) 뿐만 아니라 질적 문화지도 (지역상징지도, 문화집단군 지도, 문화접근지도 등) 작성
- 지역과 문화에 대한 지역민들의 정서와 장소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지역별 정책 의제 도출
-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지역대학과 지자체 연구소 등 전국 단위로 조직화된 지역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조사체계 구축

○ 지역문화 커뮤니티 맵핑 인프라 조성

-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지역의 정보를 수집하여 생활지도를 만들고 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공유·소통. web 2.0시대 지역문화공동체 형성의 계기로 활용
-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분석·활용·제공할 수 있는 통합적인 체계의 역할을 수행

기획→오리엔테이션→네트워크 구축→현장조사→결과 공유



〈 커뮤니티매핑과 집단지성, 사회적자본의 관계도〉

○ 지역문화 창의성 지수 개발

- 수준 높고 경쟁력이 있는 문화콘텐츠의 생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창의성
- 지역별 문화의 창의성 지수를 개발 지역문화지표조사에 포함

○ 향토문화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 전통지식 및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원천자료 보관·제공·활용 지원

- * '15년도 향토문화자료관 건립 추진('14.8.20 한국문화원연합회와 세종시 MOU체결)
-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향토문화유산 지정 및 관리·운영
- 기존 부처 및 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협력하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 문화부 문화원형 발굴, 교육부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사업 , 지방문화원 소장 자료 등과 연계

※ 지방문화원 향토문화자료 소장 현황

(2011 종합경영조사서, 한국문화원연합회)

구분	도서	이미지	영상	음성	채록물	기타	총계
건수	1,167,354	351,952	51,859	14,979	3,296	8,933	1,598,373

3-2-②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 조성

- 소규모 유희시설을 활용, 지역의 문화자원 전시 및 판매, 교육 및 문화 공간을 조성
- * 사례 : 장수 마을 박물관(서울시 지원, 마을공동체 운영)
 - 지역민의 이야기와 지역 역사를 아카이브화 하고 전시할 수 있는 마을박물관을 조성, 지역 주민이 직접 만드는 장명루(오색실로 짜는 팔찌)와 나무 목걸이 등 생태공예 전시회, 지역주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활용

○ 기초단위 생활권별로 특화된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산업 육성

- 지역 이야기(사건, 인물, 신화, 전설, 민담, 일화 등)를 소재로 하는 예술 융합작품 공모 및 공연 지원 등

3-2-③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 지역별 문화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 지역의 다양한 역사, 생활 등을 조사하여 스토리텔링 및 아카이브 구축
- 지역 콘텐츠 발굴 가이드라인 배포, 선정기준 마련 및 교육
- 문화자원 스토리텔링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스토리텔링 원천 자료 개발·보급 및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육성 및 체험



- 전통문화·설화·유적 등 지역별 특화소재를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해외 마켓 참가 지원 등 글로벌콘텐츠로 육성
- 지역별 콘텐츠 제작인프라 고도화('15년, 6개 지역), 광역단위 연계 신규 콘텐츠 클러스트 조성 지원('15년, 2개 지역)
- 콘텐츠스페이스 시설 구축('15년, 7개소) 및 콘텐츠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역문화 공공콘텐츠 우선 활용 시범사업**

- 국·공립박물관 등 지역의 공공기관 및 문화시설 보유 문화콘텐츠 활용,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등 강화
- * EU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하여 공공콘텐츠 중심 아카이브 사업 진행 중 (INFO2000 프로그램('96~'99), eContent 프로그램('01~'04), eContentPlus('05~'08) 프로그램)

○ **지역 스토리를 입힌 지역문화상품 개발 지원**

- 문화적 꿈을 상품에 담아 팔고, 문화적 체험을 파는 시장 개척

○ **지역문화관련 문화예술기업 육성 및 지원**

- 지역기반 문화상품 개발, 기존 상품 리모델링 컨설팅, 홍보, 기획, 마케팅 관련 지원체계 마련 및 자생력 배양
- 한국형 지역 맞춤형 사회적 예술기업 모델 개발 및 육성
- 문화콘텐츠 및 산업과의 연계협력 사업 공모 및 지원
- 지역문화 관련 예술·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교육, 경영컨설팅 강화 단계적 성장 유도
- 지역문화 관련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융자, 보증 등) 추진
- 분야별 맞춤형 전문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 및 문화적 마을기업 경쟁력 제고
- * 전통담장개선 등 지역 역사·문화 환경 조성 관련 마을기업의 육성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 필요성

-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 추진방향

-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 사업내용

-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문화도시 확대
-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3-3-1 국토 및 지역문화 브랜드의 통합 체계 구축

○ 국토 및 지역브랜드 계획 수립 추진

- 국토종합계획, 광역단위종합계획 수립 시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지역문화 브랜드를 고려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 브랜드 개발, 시민 참여형 거버넌스 정책 설계, 지역문화 평가 환류체계 등 수립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체계>

단위	지역문화 특화사업 및 브랜드
기초 지자체	- 문화마을, 창조마을 - 문화특화지역
광역 지자체	- 문화도시 브랜드 - 창조도시 브랜드
광역권(지자체간)	- 광역문화권역 브랜드 - 문화도시(혁신도시) 네트워크 브랜드
글로벌 지역	- 글로벌 문화중심도시 브랜드 - 동아시아 문화도시 브랜드



○ 지역과 역사를 연결하는 “역사 문화길” 조성

- 광역적 측면에서 강이나 교통망 또는 역사가 연결되는 역사문화길을 조성, 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생활문화의 흐름을 관통하도록 스토리텔링하여 관광자원화 추진
- * 예시) 경부문화길, 중원문화길, 서남해도서길, 백마강문화길
- * 중국: 실크로드, 차마고도 등 옛 길과 주변 역사문화자원을 문화경로(Cultural Route)로 복원. 또한 대운하(황하강, 양자강 등) 주변의 8개 도시 역사 문화축을 조성하여,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추진

3-3-②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 한·중·일 3국간 협의를 통해 도시 지정 및 문화 교류

-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14년 광주, '15년 청주)
- * '15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조성 및 네트워크 결성 추진

○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아시아문화도시 지정으로 확대

- 장기적으로 아시아 문화도시 교류 사업으로 발전, 아시아의 도시 문화 브랜드 창출과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육성

3-3-③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 현재 추진 중인 문화도시 주요 사업성과 확산 및 활용도 제고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비	4,112억(24%)	1조 2,577억원	국비	4,001억(32%)
		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333억(55%)		지방비	5,019억(40%)
		민자	4,072억(12%)		민자	3,564억(21%)		민자	3,557억(28%)
사업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57개 사업)		

- 새로운 지역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도시 확대 방안 마련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으로 추진체계 마련

- * 문화도시 지정, 운영방식, 성과 평가 등에 대한 의견수렴 및 심의 수행
- 문화도시 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업의 성과 확대
-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지역문화 창조도시로 조성**
 - ※ 유네스코 창의도시 : 문학·음악·민속공예·디자인·영화·미디어·음식 등 7개 분야 : 한국 4개 도시(서울, 전주, 이천, 광주)
- **주민참여형 문화프로그램 개발·기획·운영 등 프로그램 사업 위주 지원**
 -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 구축, 홍보 및 관광 연계사업 발굴·지원 등

3-3-4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형은 연간 7.5억원을 5년간, 마을형은 연간 2억원을 3년간 지원
 - *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 *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 지방비 60%
 - 지역 순회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추진 포럼 개최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문화프로그램 협력하여 지원

국토부+문체부 협력 사례

- (군산)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근대건축물 정비, 주거재생, 경관정비, 하버파크 조성 등/국비 100억) + 문체부 문화도시사업(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등 시민예술촌 운영/37.5억원)
- (청주) 국토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국비 250억) + 문체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국비 5억), '16 문화도시사업(37.5억)

- 문화예술 전문가, 현장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설팅팀 구성,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종합 컨설팅 지원



- 성과가 우수한 문화도시에 대해 문화도시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특화 문화행사 지원 확대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및 지역문화 활성화
- * '14년도 강릉단오제 등 9개 사업 지원(지특회계) → '15년도 14개 사업 지원

3-3-⑤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 문화지구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제도 개선

- 3~5년 단위 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기본적인 관리 가이드라인을 작성, 문화지구 관리체계의 내실화
- 과태료 부과규정(신설)에 근거하여 문화지구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 및 업태, 행위 등에 대한 규제조치 마련
- 기타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령 정비를 통해 문화지구 운영 내실화

○ 문화지구 특성을 강화하는 『문화지구 특성화 사업』 추진

- 각 문화지구별로 지역자체를 특성화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 * 문화지구(5개) : 인사동(서울), 대학로(서울), 파주 헤이리(경기), 개항장(인천), 서귀포(제주)
- 지역 문화시설의 랜드마크화 프로젝트, 문화시설 벨트(정동문화벨트) 등과 연계

○ 문화지구 사업 평가 및 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계획 공고이후 집행상황 평가(매3년) 및 우수 문화지구에 대한 인센티브 예산 지원
- 각 지자체가 문화로 특화된 지역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문화지구 제도 확산

3-3-⑥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확산

○ 우수 지역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 대표성, 지역주민 참여도, 창의성, 예술성 등을 감안, 지역 대표브랜드를 선정,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모델 확산
- 선정된 지역에 대해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언론사 기획기사 연재 등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지역문화브랜드 선정 결과 >

- ◆ '12년 : 성남 사랑방문화클럽, 부산 감천문화마을
- ◆ '13년 : 대구 중구 근대골목, 광주 북구 시화마을
- ◆ '14년 : 통영 동피랑 벽화마을, 청주연초제조창 공예비, 서귀포 유토피아로

○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지원**

- 지역브랜드와 지역생산품브랜드 매뉴얼 제작·보급을 통한 지역 브랜드 구축 지원
- 우수 지역문화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보여주는 지역문화생태학습장을 조성, 일반 시민이나 문화기획자에게 학습 기회 제공
- 국내 지역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역별 대표 브랜드 공연 교류 및 공연 프로젝트 지원

3-3-7]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추진

○ **지자체간 문화브랜드사업 연계 위한 광역단위 사업 컨설팅 지원**

- 문화자원을 공유한 지자체간의 공동브랜딩 사업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브랜드 경쟁력 제고
 - * 사례) 아리랑 등 무형문화유산, 역사인물 브랜드화 사업, 경기지역 도자기 축제 등 다수 지자체간 연계 문화브랜드 사업

○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 교류 활성화**

- 지역 재단 간 우수 지역문화 프로그램을 교류 촉진을 통해 양질의 지역문화 프로그램 제공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4-1. 법·제도적 기반 마련

4-1-①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강화

- 지역문화 진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 법 정비
 - 지역문화현장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변화를 반영한 법 조항의 보완 및 구체화
 -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실질적 지원 관련 조항 지속 보완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안) 마련, 표준 조례 모델로 제안(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재단 지원 등 포함)

4-1-②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 지역문화 진흥의 핵심 주체인 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
 - 지역문화재단 표준 조례 제정,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정책적 위상과 실제적 기능을 강화
 - 지역문화 네트워크 형성 및 기초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재단 관련 사업 확대 추진
 - * '14년 10월 현재 51개
- 지역문화기관 및 단체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강화
 - 지자체와 지역문화기관간의 정책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수평관계 유지
 -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 수행관련 자율성 확대 추진
- 지역문화기관 간 사업 중복 방지 및 상호 연계 강화
 - 지역문화진흥 표준조례 등을 통해 기관 간 업무 중복 방지 추진
 - * 일부 지자체의 기관 간 역할 분담 사례 등 확산
 -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거양할 수 있는 업무 체제 정비

4-1-③ 지역중심의 문화행정 행정역량 강화

○ 문화행정의 기능 및 업무구조 고도화

- 지역문화관련 행정체계의 개선·효율화를 위한 지역문화담당 직원 교육 및 워크숍 실시·지원
- 중앙·광역·지역의 문화행정 실무자 정보 공유를 위한 행정정보 공유네트워크 운영

○ 문화협력 및 교류 행정 시스템 구축

- 지역 상호 간 문화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협력 추진
- 지역 내 지역문화기관 상호 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을 가치와 과정 중심으로 평가

- 양적지표를 지역민의 문화적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가치 중심의 사업평가체계로 개선
- 정책사업 평가를 사업성적 및 결과 중심에서 추진과정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

4-1-③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풀뿌리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마을 만들기 주도 등 주민들의 문화 활동 확대
- 전국 2,166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개별 시행하고 있는 문화 체험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시설, 강사, 교재개발 등 기준 마련
- 주민자치센터의 문화 활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활성화



4-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2-①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추진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의 서비스 확대에 대응
 -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시행을 계기로 확대되는 문화복지, 생활문화 관련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총괄기능 수행
 - * 현재 지역문화관련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원 등 분산 추진 중
- 지역문화정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기능
 -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과 자료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 수행
 - 지역문화인력 인증 및 등록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총괄 및 문화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4-2-②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로 역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관련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4-2-③ 지역문화정책의 전달 및 집행 체계 정립

- 상향식 전달체계(기초→광역→중앙) 구축
 - 지역문화의 현장의견을 수렴·반영하는 정책소통채널로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지역의 행정·문화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성

- **지역문화의 정책주체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한 정책비전 수립,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 추진
 - **(지원기관 및 단체)** 문화행정주체(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를 구축, 자문 및 지원
- **지역중심의 정책 및 사업평가 체계 도입과 환류체계 구성**
 - **(기초지자체)** 지역문화진흥세부시행계획에 근거하여 자체평가 실시
 -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의 정책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광역차원의 총괄평가 및 진단 실시
 - * 광역지자체는 시행계획 평가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추진결과 및 자체평가 결과를 수렴
 - * 기초로부터 수렴된 추진결과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시행계획에 근거하여 광역차원의 종합적인 시행계획 총괄평가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의거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함께 지역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 실시
 - * 광역지자체로부터 시행계획 평가결과를 전달받아 정책평가 시 이를 참고하고 의견을 반영



V. 과제별 추진 기관

추진 과제	추진 기관
전략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문체부
1-1-2.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강화	문체부, 지자체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문체부
1-2. 생활문화 진흥	
1-2-1.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문체부
1-2-2. 지역단위 생활공동체 형성 및 활동지원 강화	문체부, 지자체
1-2-3.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구축	문체부, 지자체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1-3-1.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1-3-2.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지역문화컨설팅 강화	문체부, 지자체
1-3-3. 지역문화창조플랫폼 구축	문체부, 지자체
1-3-4.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전략 2. 지역문화 격차 해소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2-1-1. 지역문화 기초 현황 조사 및 지표 개발	문체부
2-1-2. 지역문화기반 시설 균형적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문체부, 지자체
2-1-3.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문체부, 지자체
2-2. 지역의 문화접근성 향상	
2-2-1.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2.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체부, 지자체
2-2-3.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추진 과제	추진 기관
2-3. 지역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2-3-1. 지역 문화재원 지원방식 개선	문체부, 기재부
2-3-2.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을 통한 재정확충 및 체계화	문체부, 기재부, 지자체
2-3-3.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문체부, 지자체
전략 3. 지역문화 발굴 창조	
3-1.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3-1-1.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1-2. 지역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활용 확대	문체부, 지자체
3-1-3.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문체부, 농식품부, 지자체
3-2. 지역가치 발굴	
3-2-1.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체부, 지자체
3-2-2.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개발 및 활용	문체부, 교육부, 안행부, 지자체
3-2-3. 지역 고유의 한문화(K-Culture)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3-2-4.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사업 기반 마련	문체부, 지자체
3-3. 지역문화브랜드 정립	
3-2-1.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의 통합 체계 구축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2.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육성	문체부, 지자체
3-2-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문체부, 지자체
3-2-4.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문체부, 안행부, 농식품부, 국토부, 지자체
3-2-5. 문화지구 운영제도 개선 및 활성화	문체부, 국토부, 지자체
3-2-6.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문체부, 지자체
3-2-7. 광역단위 문화브랜드 사업 추진	문체부, 지자체



추진 과제	추진 기관
전략 4. 지역문화 추진체계 정비	
4-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4-1-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문체부
4-1-2. 지역문화주체 역량 강화	문체부, 지자체
4-1-3. 지역문화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	문체부, 지자체
4-2.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4-2-1. 지역문화진흥원 설립 운영 추진	문체부
4-2-2.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구성 운영	문체부
4-2-3. 지역문화정책의 전달 및 집행체계 정립	문체부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 개괄 및 실천방안 -



2015.2

추계예술대학교 박은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2020

- 지역을 풍요롭게 문화를 다양하게 -

2015. 2.

 문화체육관광부

목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배경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목적 및 성격
3. 목표 및 추진전략
4. 추진방안
5.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전제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배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경과

연도	추진경과	비고
2004~	2004년 문화부 전문가 토론회 이후 지속추진	지속추진
2012. 05. 29	김재윤/이병석 의원에 의해 발의되었던 통합된 지역문화진흥법(안) 폐기	18대 국회임기 만료
2012. 06. 19	이병석 의원 지역문화진흥법(안) 대표발의	
2012. 08. 29	도중환 의원 지역문화진흥법(안) 대표발의	
2013	이병석, 도중환 의원에 의해 각각 발의된 법(안)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통합하고 지속 검토하여 법(안)상정	
2013. 12. 31	국회에서 법(안) 통과	
2014. 01. 28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2014. 07. 29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15. 0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실행	

출처: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배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 지역문화진흥법 목적 및 의의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 목적 (제1조)**
 -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
 -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문화국가 실현

원칙

- **지역문화진흥의 기본 원칙 (제3조)**
 - 지역간의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다양성의 균형 있는 조화
 -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추구
 - 생활문화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문화의 고유한 원형 우선적 보존

- 기 제정된 지방문화원진흥법, 문화기본법에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됨으로서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민주주의를 토대로 하는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으며 지역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제공

출처: 조광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배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정책 환경 변화

지역문화와 연계된 사회적 여건 변화	문화의 가치와 문화적 삶의 가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인구 변화)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특히 지방에서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속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인구성장률) '06) 0.49 → '10) 0.46 → '14) 0.41 - (지방인구 변화) '15년 이전 전남·강원에서 인구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등 지방인구 급격 감소 예상 - (노인인구 증가) '18년 65세 이상 노인인구 14.5%로 고령사회 진입 * '13년 현재 17개 특별·광역시체단체 중 이미 노인인구 14% 이상 고령사회에 접어든 광역자치단체가 7개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경제적 가치 인식 증대) (문화의 사회적 가치 증대) 급속한 경제성장, 도시화, 고령화 등에 의한 사회적 문제 및 비용 발생과 이를 해소하려는 사회적 요구 증대 - 지역문화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동체적 가치 회복 및 사회적 안전망 역할 수행 기대 • (문화민주주의 개념 확산)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주체로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 (문화자치 필요성 증대)
지역문화관련 법 제정 및 시행	실질적인 문화분권화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제정) 문화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국가 및 지역의 역할을 토대로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문화기본법('13.12.30.) 제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으로 지역문화진흥법('14.1.28.) 제정 • (지역문화의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 법 시행에 따른 기본요건의 충족으로 문체부는 문화재정 2% 달성을 위한 기본체계 구축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이양) 중앙정부는 지방으로 권한이양 또는 지방에 시·설·확충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자체적인 문화정책을 강화함 • (지방으로의 이양) 중앙부처 소관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 이양을 통해 지역별 문화정책 추진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등 문화부의 24개 사업 356억원 이양('05년) • (지자체로의 전환) 지역문화 관련 계정의 지특회계 이관과 포괄보조금 방식 도입으로 지자체의 예산편성 자율성 강화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배경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4 지역문화 주요 동향

전문기관 및 문화시설 기반으로 지역문화정책 강화	지역의 문화적 가치 재발견·재창조 지역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재단 설립 운영) 지역의 문화정책 수립과 사업주진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지역문화재단 기능 강화 • 지역문화재단 현황('14.12월 말): 광역 13개, 기초 49개 등 총 62개 • (지방문화원 역할 증대) 지역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활성화하는 문화주체로서 지방문화원의 위상 상승 및 역할 강화 • (지역문화기반시설 증가)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으로 인한 지역공공문화기반 시설의 획기적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창의도시 지향) 지역의 정체성과 고유문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문화가치를 제고하고 사회경쟁력을 높이는 도시발전 • (마을단위 문화활성화) 공동체 문화를 중심으로 고유한 지역가치와 삶의 문화를 찾고 향유하는 작은마을 단위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가치의 재발견 및 재창조) 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문화자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 지역문화가치의 재발견 • (지역문화 성공사례 증가) 지역고유자원과 문화, 역사를 활용한 축제,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증가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체감형 지역문화사업 전개	일상적 문화향유의 중요성과 기회가 증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문화수요 증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문화 활동 활성화 • (맞춤형 지역문화서비스 제공) 지역주민이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수요자 기반의 맞춤형 문화 활동 증가 • (문화공간의 유연성 확대) 지역문화공간의 다변화, 다목적화, 가변화로 문화예술과 일상생활을 연결, 주민들이 보다 쉽게 문화와 접할 수 있고(도서관+전시실+체험+공연+판매 등),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공원, 역, 자치센터, 골목, 로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문화증대) '일'과 '여가'의 균형에 대한 인식 증가로 여가활동으로서의 일상적인 문화향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문화향유계층의 확대) 과거 특정 소수 계층에게 한정되었던 문화 참여 및 창조 활동은 일반대중에게 그 기회가 빠르게 확산 • (노년층의 문화참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여가 인식이 확대되어 문화활동에 소극적이었던 노년층의 문화 참여와 향유 기회가 확대됨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목적 및 성격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계획 수립 목적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문화발전과 문화자치의 비전을 제시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거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기본철학, 비전 및 목표의 제시

□ 지역문화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정책 방향 수립

○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구축, 균형발전의 토대 마련,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방향 수립

□ 지역문화진흥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마련과 지역문화 육성 과제 제시

○ 지역문화의 역량강화, 균형발전, 가치창조를 통해 지역문화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지역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과제** 제시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목적 및 성격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성격

□ 지역문화진흥 중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5년 단위 법정 계획

- 지역문화진흥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추진 준거 및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단위 기본계획
- 시행기간 : 2015년 ~ 2019년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3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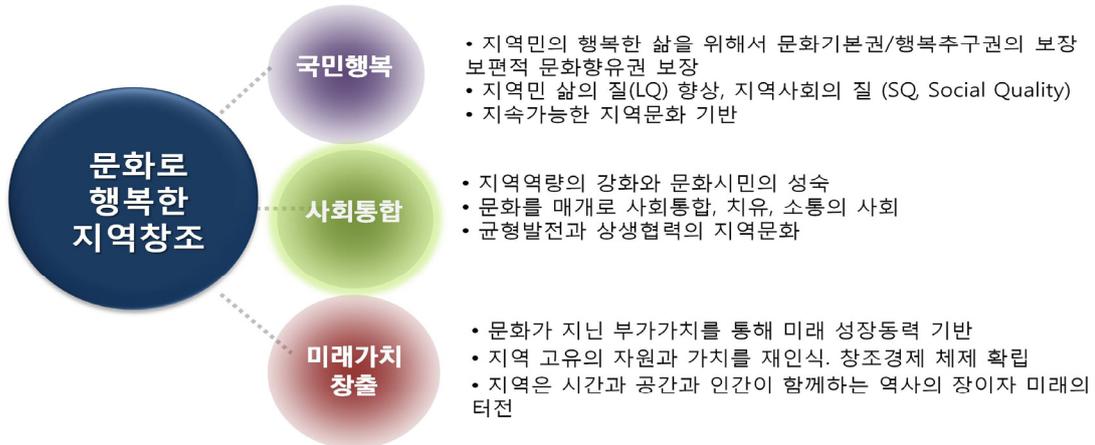
①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간 또는 관련 단체 간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고유한 지역문화의 보존·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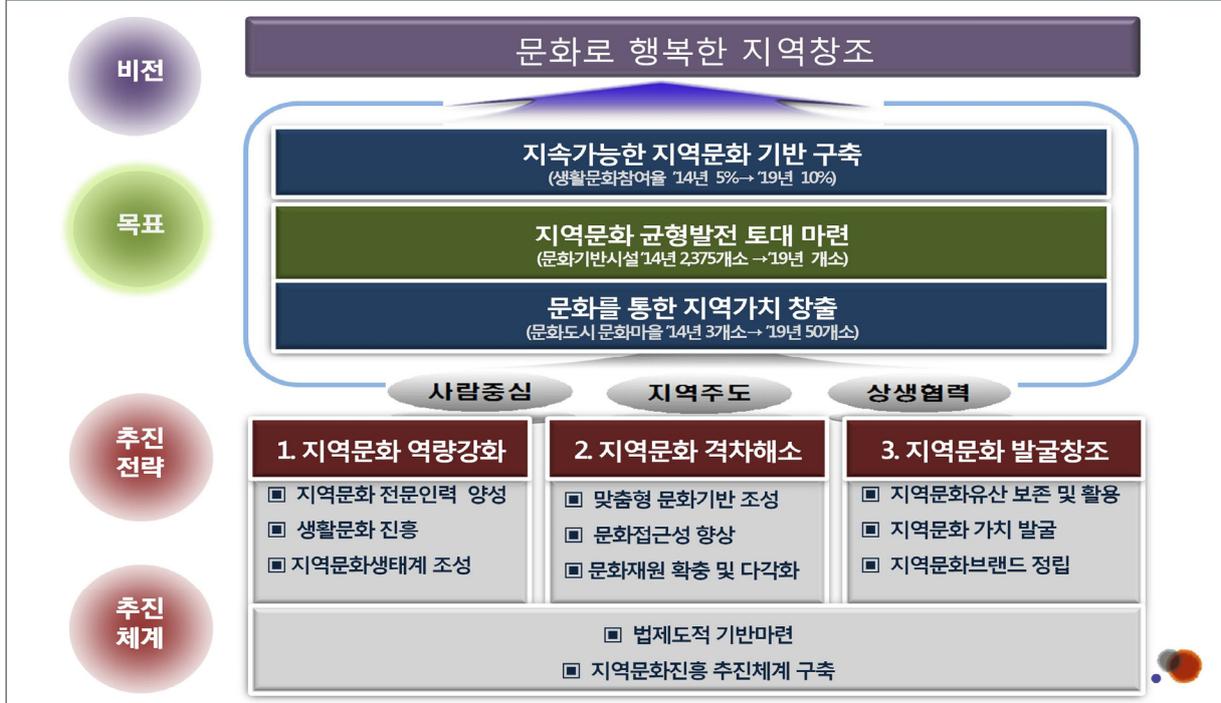
■ 지역문화융성을 위한 비전 수립



문화로 행복한 지역창조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의 기반을 구축'하고, 문화로 행복한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며, 지역마다 고유한 자원을 발견하고 가치를 재인식하는 '문화를 통한 지역가치 창출'의 세 가지 목표를 도출하였음.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역량 강화

■ 추진전략

- ☑ 지역문화 기틀을 마련하는 핵심 요소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지원
- ☑ 협력과 상생의 주민 공감대 형성과 생활문화의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 조성

	필요성	추진방향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역 스스로의 역량 강화와 주체적 발전 -협력적, 상생적 주민 공감의 연대 구축	-자발적인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람 중심의 기본 토대 마련 -지역 창조인력의 발굴 및 육성까지 종합적인 인력양성 정책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구축
1-2 생활문화 진흥	-생활문화의 진흥 및 정착으로 삶의 질 제고	-지역생활과 밀착된 풀뿌리 지역문화 확산 및 진흥 -가정, 직장, 마을 등 일상적인 삶속에서 생활문화 활성화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계획이 통합된 문화계획 수립 및 실행.
1-3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	-지역자체의 역량강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유기 적인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역문화일자리창출, 지역문화산업의 발달 등 으로 이어지는 지역문화생태계(자원중심) 조성 -장소성에 기반한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지역문화생태환경(환경 중심) 구축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역량 강화

■ 추진과제

	추진과제	비고
1-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역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육성 (지역 및 생활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지역문화 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구축	*국가자원의 지역문화인적 자원센터를 통한 등록 및 인 증, 훈련, 경력관리)
1-2 생활문화진흥	-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 (생활문화기반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및 활동 지원 (주민주도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문화자원봉사 활성화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 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 5호에 따른
1-3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수립 (도시 및 지역의 통합적 문화계획, 문화영 향평가제도* 도입) -지역문화 컨설팅 강화 (중앙단위 컨설팅 지원센터 운영, 지역단위 수행기관 지정) -지역문화 창조플랫폼 구축 (지역별 특화맞춤형 지역문화생태계 사업모델 지원) -지역문화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지역문화지원센터,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 지 원)	*<문화영향 평가제도>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역량 강화

■ 참고

1-2. 생활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3. 문화영향평가 제도

<문화영향 평가제도>

-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의거 국가와 지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문화환경,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
- 2014년도 △도시재생사업·행복주택 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학교만들기 △폐산업단지 문화재생사업 등 4개 대상 사업을 선정 시범사업 실시, 평가지표 방법 등을 보완하여 '15년 본격 시행 예정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추진전략

- ☑ 취약 지역의 문화기반시설 지속적 확충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별 문화격차·행복격차 해소
- ☑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해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조성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2-1 맞춤형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역별 문화격차, 행복격차의 해소 -지역별 인구현황 및 장래인구변화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조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새롭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답을 수 있는 신개념 지역 문화기반 구축 -고령화, 저출산 사회 생애주기별 문화기반시설 조성
2-2 문화접근성 향상	-지역 맞춤형 문화복지 및 문화향유	-지역별, 계층별 문화격차 해소 -문화접근성 향상으로 문화향유 및 문화복지 불균형 해소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역문화재원의 확충으로 문화재정 확대 -함께 행복한 지역문화 구축을 위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부재원의 확충방안 -문화재정 2% 달성 방안 마련 -지역문화재원의 다각화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 추진과제

	추진과제	비고
2-1 맞춤형 문화기반 조성	-지역별 인구변화에 따른 문화지형도, 문화기상도* 마련 -지역문화 기초현황 조사 및 지표개발 (지역문화생태계 지표, 통계) -지역문화기반시설 균형적 확충 및 운영내실화 (*문화시설 리모델링)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상주단체 운영지원 등)	* 문화기상도: 지역별 인구변화 추계에 기반한 시군구 문화기반시설 수요 예측 *문화시설 리모델링 및 활성화 (假) '문화시설재생 위원회' 구성
2-2 문화 접근성 향상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기준마련 및 실태조사 등) -문화소외계층 프로그램 지원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 등) -문화예술치유사업* 추진 (재난사고, 학교폭력 등 국민건강 증진 도모)	* 지역별 정신건강 증진센터와 연계
2-3 문화재원 확충 및 다각화	-지방 문화재원 확충* 및 지원방식 개선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등) -지역문화재원 다각화 -지역협력문화사업 통합	*장기적으로 문화관련 제한적 포괄 지역정책 추진제도 및 특별계정 신설 *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추진 (지특회계의 개선)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발굴 및 창조

■ 추진전략

- ☑ 지역문화자원의 발견 및 창조를 통해 지역문화의 독특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 ☑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발굴하여 품격 있는 지역문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과제의 필요성	추진방향 및 전략
3-1 지역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지역고유의 전통유산과 문화자원의 발굴 -지역문화의 고유성,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	-지역문화유산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가치 고양 -지역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활용으로 관광경쟁력 제고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품격 있는 지역문화를 위한 가치 창출 -가치 있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자원의 조사를 통한 지역가치 재발견 -지역문화자원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인식과 지역 자금심 제고
3-3 지역문화 브랜드 정립	지역문화자원의 미래가치 창출을 통한 일자리, 문화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적인 지역문화 상품의 발굴 및 육성,	지역문화유산, 지역문화원형 등 다양한 유형의 지역문화 콘텐츠 발굴 -지역 고유의 문화브랜드 정립을 위한 마케팅 방안 -선도사업의 개발 (장소성, 생활권, 문화권 중심)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발굴 및 창조

■ 추진과제

	추진과제	비고
3-1 지역문화유산보존 및 활용	-근·현대 역사문화공간 및 유희공간 창조적 재생* (도시재생) -지역전통문화유산 체계적 활용 (한문화 3.0사업, 매장문화재 활용) -마을별 전통놀이문화 복원 및 확산 (세시풍속, 전통지식자원 활용)	*근·현대 역사문화공간의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융성센터' 설립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
3-2 지역문화 가치발굴	-문화자원의 발굴·개발·활용 체계 (지역문화자원 아카이브, 다양성 지도, 지역문화커뮤니티 맵핑 인프라, 창의성 이수개발) -지역 생활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 (지역문화아카이브 공간) -지역별 특화된 콘텐츠기반 마련 (문화콘텐츠 아카이브, 지역문화공공콘텐츠 개발, 문화예술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 지역별 지역문화콘텐츠 클러스터 양성. 문화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3-3 지역문화 브랜드 정립	-국토 및 지역문화브랜드 통합 체계 구축 -동아시아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문화도시 지정 및 확대 * (문화도시지정, 창조도시 육성) -지역문화특화사업 추진 (문화도시, 문화마을 사업 지원) -지역문화브랜드 대상 선정 및 육성 -문화지구 지정 및 육성 -지역문화브랜드 구축 및 확산	*동아시아 문화도시: 매년 한중일 3개국에서 도시를 선정하여 교류('14년 광주, '15년 제주) *15년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 기금조성 및 네트워크 결성 추진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 15조)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3. 목표 및 추진전략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발굴 및 창조

■ 참고

3-3. 문화도시의 지정 및 확대

○ 문화도시의 지정(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야별로 문화도시 지정

구분	경주 역사문화도시			전주 전통문화도시			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		
비전	천년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역사를 재현하는 부여 문화를 창조하는 공주		
기간	2006~2035(30년)			2007~2026(20년)			2009~2030(22년)		
예산	3조 3,533억원	국비	1조7,662억(53%)	1조 7,109억원	국비	4,112억(24%)	1조 2,779억원	국비	4,001억(32%)
		지방비	1조1,799억(35%)		지방비	9,333억(55%)		지방비	5,019억(40%)
		민자	4,072억(12%)		민자	3,564억(21%)		민자	3,557억(28%)
사업 내용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 지역경제 및 관광 활성화, 생활환경 개선 등(65개 사업)			한식·한옥·한지·판소리 등 전통문화자원 보존·계승·활용,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65개 사업)			백제왕도 골격의 체계적 회복과 재생, 역사 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과 자원화 (57개 사업)		

3-4. 지역문화 특화사업 추진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사업 지원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 도시형은 연간 7.5억원을 5년간, 마을형은 연간 2억원을 3년간 지원

*'14년도 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2개소 → '15년도 문화도시 7개소, 문화마을 13개소

** 지역발전특별회계(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예산: 국비 40%, 지방비 60%

(군산) 국토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근대건축물 정비, 주거재생, 경관정비, 하버파크 조성 등/국비 100억)

+ 문체부 문화도시사업(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등 시민예술촌 운영/37.5억원)

(청주) 국토부 도시경제기반형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국비 250억)+ 문체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국비 5억), '16 문화도시사업(37.5억)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주체 및 역할

정부

○ 정부는 효율적인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지침을 마련해야 함.

2015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수립 지침 내용(안)

시행계획 개요 (개요 및 필요성)
- 시행계획 수립 (기본방향, 수립체계 및 일정, 계획의 체계, 대상기관, 대상사업, 작성체계)
- 계획수립 세부지침 (목적, 세부지침 작성요령 등)
- 행정사항

■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주체 및 역할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시·군·구 시행계획은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함. 시행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제4조 7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되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함.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①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2 지속적인 제도의 정비

■ 지역문화진흥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 정비

정부

○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 각 조항의 내용을 지역문화정책 동향변화 및 실제 시행여건에 맞추어 재정비

- 지역문화정책 변화와 실정을 반영하는 법 각 조항의 보완 / 구체화
- 지역문화진흥법 관련 현장이슈의 제반사항 반영 및 수렴
- 법의 실제적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관련사항 개정 등 (지역문화재정 확충 등)
- 지역문화재단의 법적 지위 부여 (지역문화진흥법상의 법인격 위상 강화 방안) 등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표준 조례 제정

지자체

○ 지자체, 지역문화기관의 의견을 수렴을 통해 지역현실에 맞는 조례(안) 마련, 표준 조례 모델로 제안
-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문화재단 지원 등 포함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진흥 재원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방안

■ 지자체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여건 악화

- (지자체의 재정여건 변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낮아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지역의 문화재정 상황도 동반하여 악화

<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단위 : %) >

연도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1	2012	2013
재정자립도	59.4	54.8	57.2	54.4	53.9	52.2	51.9	52.3	51.1

■ 지역문화정책 사업의 계획성 및 내실화 필요

- 지자체의 문화예산 총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소폭 하락 추세. : 지자체 문화예산 총액 및 점유 비율
- 지역문화 정책 추진관련 재원확보 및 운용의 지속적 어려움
 - 지방자치의 성숙과 확대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재정자립도의 지속적인 저하로 인하여 지역문화정책추진을 위한 재원관련 획기적 방안 필요.
- 재원부족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산 관계 즉 지자체 예산, 지특회계(지역개발계정) 보조금, 문예진흥기금, 복권기금, 국고 및 관련 상이한 중앙기관의 지침 및 가이드라인으로 지역문화 통합 재정 및 정책 관리가 어려움.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3 지역문화진흥 재원 및 지역문화진흥기금 확충방안

■ 지역문화관련 (가칭)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 신설 추진

- ▶ 2015년 지특회계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특별자치계정,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계획을 고려 중장기적 (가칭)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추진

■ 지특회계 지역문화관련 계정 신설

- 지특회계 내에 지역문화진흥특별계정신설 (15년 계획, 생활기반, 경제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외에 신설)

■ 교육사회문화발전 계정 (가칭)신설

- 지방자치 행정에서 건설 관련 사업 및 기존에 우선되는 사업에 의해 타 분야 정책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혹은 제한적으로 교육, 사회, 문화분야 소프트웨어 예산 계정 신설

■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 국고와 지방예산에서 재정자립도 차별적으로 출연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신설, 이를 위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필요.





4. 추진방안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4 지역문화진흥 추진체계 정비

■ 지역문화진흥원의 설립 추진

- ▣ 미래지향적 지역 문화 시스템 및 인프라 구성 기반 마련
 - 국가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의 수행
 - 지역 문화컨설팅, 지역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지역문화 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역 협력 사업 예산 마련 (지역문화정책 수립 및 평가, 지원)
 -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기관의 성격이 아닌 플랫폼 기관으로서 역할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등 지역문화의 핵심기구로 역할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관련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관련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수행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회의 운영
- ▣ 지역문화관련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설정 및 정책 전달체계 마련 필요

5. 기본계획 수립 및 실천을 위한 전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

1 개념정립 의제

- ▣ 지역문화 개념 재정립: 법과 정책 용어로서의 개념 재정립, 학문적, 일상적 용어와 구분 필요
 - (지역문화, 지방문화, 문화예술, 생활문화, 전문인력 등의 개념 명확화 필요)

2 정책추진의 새로운 방식 도입

- ▣ 사업 중심이 아닌 장소 중심의 정책 추진: 어떤 한 대상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전략 수립 후에 실행
- ▣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사업수립 방식의 개발 (개별사업을 지양하고 통합추진방식)
- ▣ 법 정부차원에서 부처간, 지역간 중복사업의 배제 (정부차원의 협력사업에 대한 대응방식과 논리 개발)

3 추진체계 및 주민주체의 명확한 역할분담

- ▣ 정책 추진주체, 추진체계, 협력체계의 명확한 역할분담 필요
- ▣ 사업추진 주체 및 정책 수혜대상의 명확한 지향점 설정

4 자원 확충 방안

- ▣ 지역문화진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자원확충방안, 제도정비 등
- ▣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재원다각화 방안

지역은 **삶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지역문화로 이끌겠습니다.
지역은 **얼굴**입니다.
저마다 고유한 얼굴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문화를 가꾸겠습니다.
지역은 **역사**입니다.
다양한 시대의 기억을 현재 삶터와 조화시켜 **미래**로 진화하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지역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인간**이 함께 합니다.
문화를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한**, 풍요로운 지역을 만들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